

# 외국대학교 공동학위·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규정

2013. 5. 15 제정

## 제 1 장 총칙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35조의5 및 대학원 학칙 제26조의3에 따른 외국대학교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한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용어의 정의) ①“교육과정 공동운영”이라 함은 본교 학위과정에서 설치·운영하는 교과과정을 외국대학교의 협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.  
②“공동학위”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과과정에 의하여 양 대학이 학위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하나의 학위증서에 공동의 명의로 수여하는 학위를 말한다.

③“복수학위”라 함은 본교와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에서 각각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상호인정해서 양 대학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각 대학의 명의로 수여하는 학위를 말한다.

제 3 조 (교육과정 공동운영 협정체결) ①제2조제1항의 “교육과정 공동운영”은 본교와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에 한하여 실시한다.

②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수여는 본교와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수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에 한하여 실시한다.

③협정에는 외국대학교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를 수여하는 학문 분야를 명시하여야 한다.

④대학(원)이 외국대학교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교류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4 조 (시행규칙)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 제 2 장 본교 학생의 외국대학에서 수학

제 5 조 (지원대학) 지원대학은 본교와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수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6 조 (지원자격) ①본교 재학생으로서 외국대학에 수학 하고자 하는 자(이하“지원자”라 한다)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
1. 지원 당시 본교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한 자
2.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학사과정은 3.0 이상, 대학원과정은 3.3 이상인 자

3. 학칙에 의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
4. 외국대학에서 수학을 위하여 필요한 언어능력을 갖춘 자
5. 기타 외국대학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자

②총장은 지원대학인 외국대학교와의 협정에 따라 제1항의 지원자격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.

제 7 조 (수학신청) ①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서류를 대학(원)장에게 제출한다.

1. 수학신청서
2.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 추천서
3. 언어능력 증명서
4. 기타 필요한 서류

제 8 조 (수학허가) 수학은 소속 대학(원)장의 추천을 받아 국제교류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.

제 9 조 (등록 및 등록금) ①외국대학에 수학을 허가받은 자는 수학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본교와 외국대학에 등록하여야 하며,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외국대학교와의 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총장은 외국대학에 수학을 허가받은 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 10 조 (교과목의 이수) 이수 교과목은 전공 관련 교과목을 원칙으로 하되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외의 교과목도 이수하게 할 수 있다.

제 11 조 (취득학점) ①학기당 취득학점은 학사과정은 18학점, 대학원과정은 12학점, 계절학기는 9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.

②제1항에 따라 수학기간 동안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학칙에 따라 본교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 다만, 외국대학교와의 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 12 조 (수학기간) ①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수여에 필요한 수학기간은 양측 대학에서 동등한 기간을 수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외국대학교와의 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외국대학에 수학을 허가받은 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수학을 포기하거나 수학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외국대학교와의 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 13 조 (학점의 인정 기준) ①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이 본교 성적부여방식과 일치하면 그대로 학적부에 기재하고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S/U로 기재하되, 평점평균 산출시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에서 수학한 경우에는 학점 및 평점을 인정한다.

②제1항의 경우에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

제 14 조 (학점인정 절차) ①수학이 허가된 자는 수학기간 종료 후 즉시 성적증명서와 이수기록 등 관련 서류를 대학(원)장에게 제출한다.

②대학(원)장은 총장에게 학점인정을 신청한다.

③총장은 전항의 신청내용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취득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적부에 등재한다.

제 15 조 (학위수여) ①외국대학에 수학을 허가받은 자가 본교와 외국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의하여 양 대학의 공동학위 취득요건을 갖춘 경우, 양 대학은 하나의 학위증서에 공동의 명의로 학위를 수여한다.

②외국대학에 수학을 허가받은 자가 본교와 외국대학에서 각각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각 대학의 학위취득요건을 갖춘 경우, 각 대학은 각 대학 명의로 학위를 수여한다.

### 제 3 장 외국대학 학생의 본교 수학

제 16 조 (지원자격) 외국대학과의 협정에 따라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본교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외국대학 학생은 외국대학에 재적 중인 자로서 해당 학위과정을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.

제 17 조 (수학허가) 지원자는 소정의 지원서류를 제출하고 심사절차를 거쳐 총장의 수학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 18 조 (수학기간)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수여에 필요한 수학기간은 양측 대학에서 동등한 기간을 수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외국대학과의 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 19 조 (등록 및 등록금) ①정규학기 수학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본교에 등록하여야 하며,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외국대학과의 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등록금은 본교 재학생의 해당 학기 등록금을 기준으로 부과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신청 학점 수를 기준으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다.

③수학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사용료, 실험실습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.

④계절수업 수학학생은 본교에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⑤총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등록금 등을 감면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 20 조 (수강신청 등) 수강신청, 변경 및 취소는 본교가 정한 절차에 따른다.

제 21 조 (시설물의 이용) 수학허가를 받은 학생에게는 도서관, 실험실습실, 기숙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
제 22 조 (수학허가의 취소) 수학허가를 받은 학생이 수학기간 중 본교의 학칙을 위반한 때에는 수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제 23 조 (학위수여) ①본교에서 수학을 허가받은 자가 본교와 외국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의하여 양 대학의 공동학위 취득요건을 갖춘 경우, 양 대학은 하나의 학위증서에 공동의 명의로 학위를 수여한다.

②본교에서 수학을 허가받은 자가 본교와 외국대학에서 각각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각 대학의 학위취득요건을 갖춘 경우, 각 대학은 각 대학 명의로 학위를

외국대학과 공동학위·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규정

수여한다.

② 제1항 및 제2항의 본교 학위취득요건을 갖추에 있어서, 본교에서 수학을 허가받은 외국대학 학생이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교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.

부 칙(2013. 5. 15. 제정)

제 1 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(경과규정) 이 규정 시행 당시 본교에서 수학을 허가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수학을 허가된 자로 본다.